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및 손실 보전〉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2
2.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8.
3. 회부연월일 : 2025.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의8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8(소상공인의 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	---

사망률과 건강검진 참여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¹⁾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자 420만여 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횟수를 따져 12년(2010~2022)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불참 비율(69.22%)이 근로자(1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건강검진을 매년 받은 근로자(남성 기준)의 사망률(10만 인년²⁾당 126.06명)에 비해 검진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10만 인년당 386.66명)이 높게 나타났다.

동 연구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혹은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³⁾되는

1) 윤병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ll-Cause Mortality and Health Check-Up Participation Among Healthy Middle-Aged Worker: A Nationwide Study”,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2023.12.

2) 인년(人年, person-year): 1명을 1년간 관찰한 것을 1인년으로 산정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등 강제 수단이 작용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수단이 없어 건강검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형태(근로자인지 혹은 자영업자인지)가 건강검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의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았음.

개정안 제12조의8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그 취지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⁴⁾ 및

-
-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 4) 「국민건강보험법」
-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비용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건강검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 수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임.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사례⁶⁾가 있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⁷⁾가 있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5)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제12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6)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고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	업체당(1인) 25만원 지원 (25만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부산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심사 시점 연체 중인 자 제외)	1인당 25만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건강 실태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따른 건강 보호 효과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영업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2.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의8제2항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8(소상공인의 의료 지원)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안 제12조의8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감소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⁸⁾의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근로자와 달리 자율적으로 영업일·영업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자영업의 주요한 특징인바, 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손실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검진에 따른 영

8)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임.

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지원할 경우 추가개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정안의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미비하고, 건강검진 수검 소상공인의 매출액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⁹⁾

문 의 처
02)6788-5465

9)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3.26.